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2월 1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15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2. 13. (금)	담당부서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3-870-5450)	담 당 자	배종수 연구관(043-870-5574)

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는 강화하고, 부처간 중복된 규제는 해소한다.

- 산업부,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「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」 개정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**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**하고, 업체의 부담이 되었던 **산업부·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**하는 내용을 담은 **「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(고시)」를 개정**하였다.

□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 능력은 떨어지며,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은 바,

* 어린이는 유해화학물질(프탈레이트계가소제 등)의 피부흡수량은 성인의 3배, 중금속의 소화관 침투성은 성인의 5배이고 몸속 축적성도 높음 (일본 환경성)

○ **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**하던 '니트로사민류'에 대해,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**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(elastomer)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**하였다.

* 세부 안전기준 내용은 <붙임> 참조

<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예시 >



○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(IARC)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서,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.

□ 한편, 제조·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, **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**하고 있는 **어린이제품의 '프탈레이트계 가소제'에 대한 규제**를 **산업부의 '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'으로 일원화**하였다.

○ 기존에 산업부는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,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,

- 환경부는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는데, 양 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고 더욱이 양 규제의 시험방법이 달라서 업체는 애로를 겪었다.

○ 향후에는 **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**에 대해 **「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」을 준수하면 된다.**

< 어린이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 개선 내용 >

부처 (관련법)	현행 기준		개정 기준
산업부 (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)	•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 : DEHP, DBP, BBP, DIDP, DnOP, DINP (6종) •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 : DEHP, DBP, BBP (3종)	➡	DEHP, DBP, BBP, DIDP, DnOP, DINP (6종)
환경부 (환경보건법)	DnOP, DINP (2종)		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우선 적용*

* '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'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 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(DnOP, DINP)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봄
('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' 개정 고시, 12월10일 환경부)

□ 금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, **어린이제품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**되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, 제조·수입업자들은 그동안 **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·검사비용을 절감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「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」을 12월 3일 고시 완료하였으며, **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,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**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배종수 연구관(☎ 043-870-55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

□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 기준 추가

항목		허용치
니트로사민류	N-니트로소디메틸아민 (N-nitrosodimethylamine), CAS No. 62-75-9	총 합 0.01[1] / 0.05[2] mg/kg 이하
	N-니트로소디에틸아민 (N-nitrosodiethylamine), CAS No. 55-18-5	
	N-니트로소디-n-프로필아민 (N-nitrosodi-n-propylamine), CAS No. 621-64-7	
	N-니트로소디-n-부틸아민 (N-nitrosodi-n-buthylamine), CAS No. 924-16-3	
	N-니트로소피페리딘 (N-nitrosopiperidine), CAS No. 100-75-4	
	N-니트로소피롤리딘 (N-nitrosopyrrolidine), CAS No. 930-55-2	
	N-니트로소몰폴린 (N-nitrosomorpholine), CAS No. 59-89-2	
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	N-니트로소디메틸아민 (N-nitrosodimethylamine), CAS No. 62-75-9	총 합 0.1[1] / 1.0[2] mg/kg 이하
	N-니트로소디에틸아민 (N-nitrosodiethylamine), CAS No. 55-18-5	
	N-니트로소디-n-프로필아민 (N-nitrosodi-n-propylamine), CAS No. 621-64-7	
	N-니트로소디-n-부틸아민 (N-nitrosodi-n-buthylamine), CAS No. 924-16-3	
	N-니트로소피페리딘 (N-nitrosopiperidine), CAS No. 100-75-4	
	N-니트로소피롤리딘 (N-nitrosopyrrolidine), CAS No. 930-55-2	
	N-니트로소몰폴린 (N-nitrosomorpholine), CAS No. 59-89-2	

비고 1.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(elastomer)(예: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, 치발기, 칫솔 등)에 적용한다.

2. 1항에 해당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(elastomer)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(elastomer)(예: 마우스피스, 고무풍선 등)에 한하여 적용한다.

□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기준 개정

기존	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은 DEHP, DBP, BBP,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DEHP, DBP, BBP, DIDP, DnOP, DINP 총 합 0.1 이하 (다만,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어린이제품 중 DEHP, DBP, BBP, DIDP, DnOP, DINP의 총합이 0.1 %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 표시)
개정	DEHP, DBP, BBP, DINP, DIDP, DnOP 총 합 0.1% 이하